주말경제

Economy

■60대후반 은퇴생활자, 상속세 절감방법은?

사전 증여나 재산처분으로 節稅

Q 사업을 정리하고 여유있는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의 남자입니다. 부인(65)과 1남3녀를 두고 있는데 출가한 딸 3명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막내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미혼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금보다 '보험상품' 물려주는 것도 減稅방안
상속개시 1~2년전 재산처분 증빙자료 갖춰야

A 상속이란 개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그 사람의 사후에 법률이나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단순하게 상속세만 절감하는 계획보다는 유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딸은 큰 문제는 없으나 막내아들을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하고 현재시점에서 6억원이 넘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함으로 재산규모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장 작성 등 구체적인 상속설계부터 세워라=상속설계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공정한 자산 배분 ▲가족간 분쟁방지 ▲상속세금 및 비용 최소화 ▲비상시 유가족을 위한 충분한 현금 확보 ▲남은 유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처럼 모아 놓은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재산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후에 가족간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길 바란다. 유언을 바탕으로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유언장의 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간 무상이전에 의한 대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세법적용이 엄격하다.

현재 보유중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후 자녀들과 협의가 가능한 것은 협의해 증여나 처분을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총 상속재산 계산시 보유중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파악되면 상속재산을 줄여야 한다. 노후에는 부동산 비율을 줄이고 현금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부동산은 단기간에 처분이 어렵고 사후에 자녀들간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현금은 모든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2천만원이 넘으면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재산공제가 되므로 10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씨의 경우 현재 금융재산이 13억원이 넘고 10년 후에는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적극적으로 현금성 재산을 사전 분산시켜야 한다.

투자상품도 확정금리 상품으로 가입해 세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식상품에 투자한 것은 자녀 명의의 증여나 기타 방법으로 장기 투자하면 좋다. 최근에는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보험상품으로 상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고 자녀들의 보장도 강화할 수 있어 친족간 증여세 면제금액 한도내에서 현금 증여후 자녀와 손자들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해 준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이다.

◇상속개시 1~2년전에 재산처분시 증빙자료 준비해야=부모 사망 몇년후에 갑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모가 사망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했거나 채무를 부담했다가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된 경우로 상속인들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인이 아무런 자료가 없어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처에 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 한다고 알고 있지만 부당하게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위해 1~2년 사이에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처분한 경우나 자금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기부하려면 상속개시 6개월내에=상속세 절세 못지않게 기부문화도 중요하다.부의 대물림보다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유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줘야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일정금액을 기부한다면 상속세에 대한 걱정도 덜고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기부는 상속세 납부기한인 상속개시 6개월이내에 해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씨의 자산현황

변경전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보통예금	1,250만원	담보대출	50,000만원
정기예금	65,000만원		
주식/펀드	72,000만원		
투자부동산	200,000만원		
주거용주택	17,000만원		
계	355,250만원	계	50,000만원
순자산 305,250만원			

변경후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보통예금	1,250만원		
정기예금	65,000만원		
펀드	22,000만원		
투자부동산	200,000만원		
주거용주택	17,000만원		
계	305,250만원	계	0만원
순자산 305,250만원			

고재윤CFP (교보생명)

이규호CFP (광주은행)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이번주 상담자 : 고재윤CFP(교보생명), 이규호CFP(광주은행)

◇재산 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forum(광주FP포럼)

상속세의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방식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상속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상속재산(보험금 등 포함)

▲상속개시일 이전 1년이내 2억원 이상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

▲상속개시일 이전 2년이내 5억원 이상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

▲상속개시일 이전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

■김씨의 상속세 절세방안

배우자 증여 10년 주기 3억까지 세부담 없어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배우자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배우자간 매 10년 주기로 3억원씩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현금보다 부동산 등 실물재산을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 증여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는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부담부증여 등 증여세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증여 당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이상 증여시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금액에 맞춰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고 설령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최초 증여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증여해야 한다.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증여가 유리=부동산증여는 시가가 없는 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70~90%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절세전략=보험계약시 보험료를 자기의 소득으로 불입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상속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보험금 수취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사전 처분전략

상속 개시전에 상속재산을 처분, 예금인출 및 채무를 신규로 부담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현금화해 이를 상속인들에게 사전 분산할 수만 있다면 거액의 상속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